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내용 추가 안내

-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폐지 -

2024.1.1.부터 시행되는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폐지에 따른 월단위 월별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문의사항

- (정산여부) 월별보험료 산정방식만 일할계산에서 월단위계산으로 변경되었을 뿐, 기존과 동일하게 상실 또는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최종 정산함
 - 일할계산되어 부과되던 월별보험료가 월단위 산정으로 그 달에 부과되지 않거나 1개월분으로 부과되는 것일 뿐, **해당 년도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최종 정산함**
- (월평균보수) 월별보험료 산정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다음 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기존과 동일함.

고용일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적용 및 신고방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전년도 12.12.이전	$\frac{\text{전년도보수총액}}{\text{전년도근무개월수}}$	당해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전년도 1.1.~12.12.이고 고용일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	$\frac{\text{전년도보수총액}}{\text{전년도근무일수}} \times \frac{\text{전년도근무일수} - \text{고용월근무일}}{\text{고용월을 제외한근무개월수}}$	당해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전년도 12.13.이후	$\frac{\text{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text{개월}}$ 단,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 및 기간	고용일이 속한달 ~ 다음다음연도 3월

- (적용대상)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후 퇴직 또는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는 상용근로자, 일반예술인
 - (적용제외) 월별보험료 산정대상이 아닌 자진신고사업장(건설, 별목업 등) 소속 근로자, 기준보수 또는 실제 지급된 월보수액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특례적용자, 노무제공자 및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
- (원천공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던 보험료가 그 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뿐 최종 정산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실제 지급된 보수에 대해 원천공제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원천공제는** 일할계산 보험료 부과 방식 적용시점부터 실제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공제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 근로자 A가 2024.1.1. 취득 후 2024.1.11. 상실한 경우(퇴직일 1.10.)

(월평균보수 300만원, 상실신고 보수총액 150만원, 고용요율: 20.5/1000)

○ 기존 일할계산방식(월별보험료= 월평균보수 *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보험요율)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3,000,000	10	967,741	967,741	19,810	17,400	2,410
보험월 합계	3,000,000	10	967,741	967,741	19,810	17,400	2,410
정산			1,500,000	1,500,000	30,750	27,000	3,750
정산차액			532,259	532,259	10,940	9,600	1,340

- 1월 부과액은 1월 보험료 + 정산차액 = 19,810 + 10,940 = 30,750

○ 개정 월단위계산방식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3,000,000		3,000,000	3,000,000	61,500	54,000	7,500
보험월 합계	3,000,000		3,000,000	3,000,000	61,500	54,000	7,500
정산			1,500,000	1,500,000	30,750	27,000	3,750
정산차액			- 1,500,000	- 1,500,000	- 30,750	- 27,000	- 3,750

- 1월 부과액은 1월 보험료 + 정산차액 = 61,500 + (- 30,750) = 30,750

- 1.5. 취득한 경우에도 1.10. 퇴사하였다면 동일하게 산정

□ 근로자 A가 2024.1.22. 취득한 경우(월평균보수 300만원, 고용요율: 20.5/1000)

○ 기존 일할계산방식(월별보험료= 월평균보수 *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보험요율)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3,000,000	10	967,741	967,741	19,810	17,400	2,410

- 2월 부과액은 19,810

○ 개정 월단위계산방식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부과액없음		

- 1월은 근무시작일이 1일이 아니므로 부과액 없음

□ 근로자 A가 2024.1.22. 취득 후 2024.2.11. 상실한 경우(퇴직일 2.10.)

(월평균보수 300만원, 상실신고 보수총액 220만원, 고용요율: 20.5/1000)

○ 기존 일할계산방식(월별보험료= 월평균보수 *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보험요율)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3,000,000	10	967,741	967,741	19,810	17,400	2,410
2월	3,000,000	10	1,034,482	1,034,482	21,200	18,620	2,580
보험월 합계	6,000,000	20	2,002,223	2,002,223	41,010	36,020	4,990
정산			2,200,000	2,200,000	45,100	39,600	5,500
정산차액			197,777	197,777	4,090	3,580	510

- 2월 부과액은 1월 보험료 + 2월 보험료 + 정산차액 = 19,810 + 21,200 + 4,090 = 45,100

○ 개정 월단위계산방식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2월	3,000,000		3,000,000	3,000,000	61,500	54,000	7,500
보험월 합계	3,000,000		3,000,000	3,000,000	61,500	54,000	7,500
정산			2,200,000	2,200,000	45,100	39,600	5,500
정산차액			- 800,000	- 800,000	- 16,400	- 14,400	- 2,000

- 2월 부과액은 2월 보험료 + 정산차액 = 61,500 + (- 16,400) = 45,100

□ 근로자 A가 2024.1.1. 취득 후 2024.1.11.~2.10. 동안 휴직한 경우

○ 기존 일할계산방식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3,000,000	10	967,741	967,741	19,810	17,400	2,410
2월	3,000,000	19	1,965,517	1,965,517	40,270	35,360	4,910

- 1월은 휴직시작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2월은 휴직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할계산

○ 개정 월단위계산방식

보험월	월평균보수	근무 일수	실급 산정보수	고직 산정보수	보험료 합계(a+b)	실급 보험료(a)	고직 보험료(b)
1월	3,000,000		3,000,000	3,000,000	61,500	54,000	7,500
2월					부과액없음		

- 2월은 근무시작일이 1일이 아니므로 부과액 없음(취득일이 1.2.일 경우 1월도 부과액 없음)